

# 고 소 장

고 소 인 〇 〇

ㅇㅇ ㅇㅇ구 ㅇㅇ길 ㅇㅇ

피고소인 △ △ △

ㅇㅇ ㅇㅇ구 ㅇㅇ길 ㅇㅇ

### 고 소 사 실

- 1. 고소인은 고소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주업으로 하는 □□회사에 금○○○원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콘도미니엄 이용시에 필요한 회원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.
- 2. 20○○. ○. ○. 고소인이 ○○동 소재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지갑을 정리하고 있던 중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이 방문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카드를 습득하여 콘도미니엄 이용 시에 부정하게 행사함으로써 피해를 입어 고소하오니 이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입 증 방 법

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20 O O 년 O 월 O 일 위 고 소 인 O O O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			<u>.</u>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록 <b>^^</b>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236조
범죄성립 요 건	권리·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때		
형 량	・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・300만원 이하의 벌금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<ul> <li>○ 근거 : 검찰청법 10조</li> <li>○ 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</li> <li>○ 대정신청)</li> <li>○ 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</li> <li>○ 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</li> <li>○ (헌법소원)</li> <li>○ 근거 : 헌법재판소법 68조</li> <li>○ 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</li> </ul>		

#### 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#### 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